

## 자치경찰 지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 청 호\*

### <목 차>

- |                |                |
|----------------|----------------|
| I. 서론          |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
| III. 조사설계 및 분석 | IV. 조사분석결과와 논의 |
| V. 결론          |                |

### <요 약>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 여러 차례 경찰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자치경찰 논의는 있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 참여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 모형은 국가경찰과 병렬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치경찰에 임명권을 가지며 이중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을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 하에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을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하며 어떤 요인이 자치경찰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의 지원희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지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수가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현행 경찰조직 보다 덜 관료적이고 민주적인 것이라는 조직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진이나 근무여건의 유리, 더 나은 사회적 대우에 대한 기대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제어 : 국가경찰, 자치경찰, 민주성, 지원희망 】

\* 경찰종합학교, 경찰학박사

## I. 서론

경찰은 흔히 선진민주사회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국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활동하는 정부의 얼굴역할을 하고 그 나라의 국민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을 '움직이는 작은 정부' 또는 '거리의 재판관'이라고도 한다(이황우, 2002:73). 영국에서는 경찰을 '보비(Bobby)', 일본에서는 '모시모시상(여보세요씨)'이라는 애칭을 통해 경찰이 친절과 공정의 상징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선진국 경찰들이 이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데에는 경찰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가 지나가고 21세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세계 선진각국의 경찰은 민주주의 사회제도의 틀에서 경찰의 가장 바람직한 역할과 그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고민하면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경찰활동의 철학이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 철학은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법집행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자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경찰이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 및 상호작용 증진을 통해 지역의 범죄와 무질서 등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화 된 경찰조직을 분권화시킬 필요가 있다(McGareel, 2003:38).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국립경찰 출범이후 현재까지 중앙집권화 된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해방이후 각종 무질서와 사회혼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고, 6·25전란 때에는 각종 전투참여 및 공비잔당의 소탕 작전에서 구국경찰로서의 역할 그리고 60-70년대 및 80년대를 거치면서 각종 민주화 운동의 요구에 따른 정권의 불안정성 가운데 국가보위와 사회질서유지라는 '시국치안' 면에 있어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는 유용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측면에서는 문제점들이 드러나 해방이후 지금까지 경찰의 민주성 확보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sup>1)</sup>.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1991년 경찰법 제정을

1) 우리나라에서 경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는 1955년 9월 법무부가 제안한 경찰법안으로 그 내용의 골자는 경찰을 내무부에서 분리하여 대통령 직속의 경찰위원회에서 관리토록 하고 지방에서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경찰위원회에서 경찰을 관리하는 방안이었으나 국회에 회부되지 못하였다. 그 이후 1956년 자유당에서 제출한 법안은 1955년 법무부 법안과 거의 비슷하고 경찰관리기관인

통해 내무부의 보조기관에 머물렀던 치안본부를 행정자치부(舊 내무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관리를 위해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다가 현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중심의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초에는 금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예정이었으나 다시 연기되어 2007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동아일보, 2005.8.3:A6) 현재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에서 입법준비중인 자치경찰법안을 보면 자치경찰의 신규임용 가운데 기존 국가경찰공무원을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치안센터(구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하지 않고 국가경찰로 남을 예정이다.

최근까지 자치경찰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조직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국가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이 시행될 경우 국가경찰을 이직하고 자치경찰로 전직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7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의 시범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치안현장의 최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경찰관들이 기초 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을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지원하려는 동기를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이러한 연구를 함에 있어 문헌조사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

경찰위원회의 명칭을 공안위원회로 한 것이었다. 1960년 4·19이후 등장한 민주당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안을 만들었으나 5·16혁명으로 중단되었고, 5·16혁명이후 1972년 신민당에 의해 공안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조직법안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10·26사태 이후 1980년에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공안위원회로 하여금 경찰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안이 있었으나 5·17로 무산되었다. 1989년에는 야3당이 발의한 경찰법안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1990년 12월 정부에서는 현행 경찰법안을 제출하여 1991년 5월 국회를 통과하였다(이황우, 2002:8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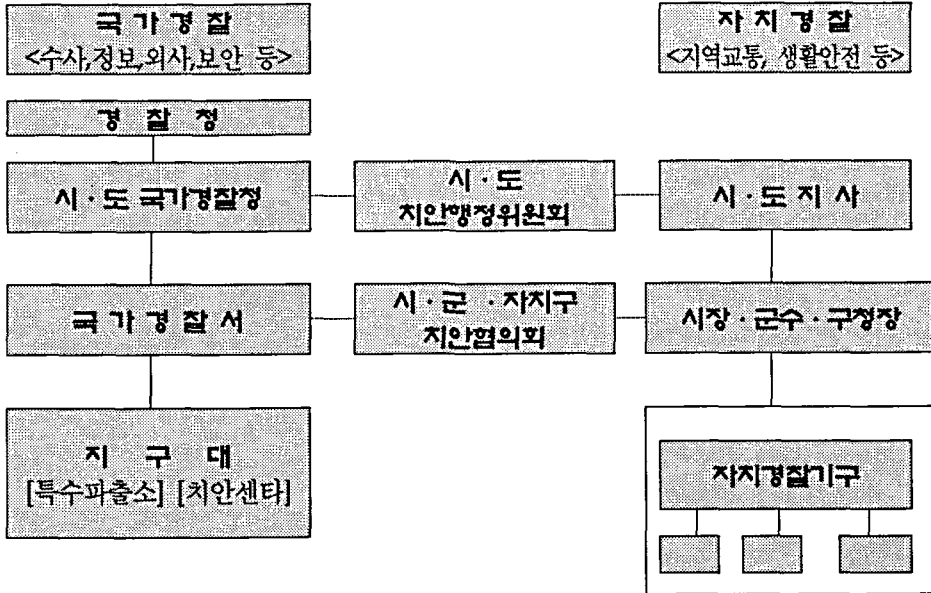
2) 금년 상반기 경찰종합학교에 교육중인 교육생들과 대화하는 도중 자치경찰제 시행될 경우 현행 국가경찰로 있는 것 보다는 자치경찰로 전직하는 것이 승진이나 보수 및 근무여건 등이 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본 연구자는 이 주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 1. 시범예정인 자치경찰제의 모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9월 16일 정부혁신단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고 금년 8월 4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sup>3)</sup> 현재까지 밝혀진 자치경찰제 법안의 기본골자는 주민생활에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에 국가경찰과 병렬적으로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고(자치경찰법안 제4조 및 제5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협조 및 조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심의·의결기구로서 '치안행정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협의기구로서 '지역치안협의회'를 두는 것이다(자치경찰법안 제7조 내지 제9조).

〈그림2-1〉 자치경찰제 예상 조직도<sup>4)</sup>



3) 경찰청은 금년 3월 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안업무 보고에서 상반기 중 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 하고 10월부터 2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연기되어 2007년 하반기 부터 시범적으로 서울 강남구 등 10여 곳에 시행할 예정이다.

4) 경우신문, 2005. 3. 4, 1면.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치총경·자치경정 또는 자치경감을 자치경찰대장으로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은 시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자치경찰대장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sup>5)</sup>·지역교통<sup>6)</sup>·지역경비 사무 및 자치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치안행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자치경찰법안 제6조).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또는 자치경찰 상호간의 업무협조 및 조정을 위하여 심의·의결기구로서 시·도지사 소속하에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는 협의기구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시·군·구에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협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활동에 관한 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대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등과 경찰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자치경찰법안 제7조 내지 제9조).

자치경찰공무원에게는 불심검문권,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보호 조치,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조치, 직무수행시 경찰장비의 사용 등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준용되며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무기를 휴대·사용하도록 하고, 범죄를 인지한 경우 및 현행범인,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가경찰에 인계토록 하고 있다(자치경찰법안 제10조 내지 제12조).

법집행을 하는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하

5)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로는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주민협력 방법활동, 안전사고 예방, 아동·노인·여성학대 및 가정·학교폭력 예방 등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의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이 있다

6)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로는 교통안전 및 소통,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주민협력, 지역교통활동 등이 있다.

되, 국가경찰과 구별될 수 있도록 표지장 등을 부착토록하고 있으며, 자치경찰공무원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에 따라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자치경찰법안 제15조, 제25조, 제26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하되 국가경찰공무원 등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을 면제하는 특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경찰공무원의 균형있는 배치를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및 자치경찰 상호간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인 자치경찰이 별도의 채용과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채용시 시험 실시업무를 국가경찰 또는 시·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을 국가경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자치경찰법안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상호 정보·기술 등의 제공, 유·무선 통신망과 시설물의 상호 이용 및 경찰력 운용상황·계획을 통보하는 등의 상호협력토록 하고 있다(자치경찰법안 제16조).

자치경찰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를 같이 하는 자치경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시·도 치안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시·도를 달리하는 자치경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을 적용하여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자치경찰법안 제19조).

자치경찰의 경찰권 행사에 따른 권한남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 지사의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군·자치구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시 미리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군·자치구에 대한 감사시 경찰청장이 참여토록 하고 있다(자치경찰법안 제21조, 제22조).

자치경찰제의 전면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시범실시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이전에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자치경찰법안 부칙 제2조).

## 2. 이직 및 이직요인에 관한 이론

현행 국가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새롭게 창설될 자치경찰로 직장을 옮기려는 것은 넓게는 이직에 해당하며 좁게는 전직이라 할 수 있다. 이직이나 전직은 행정학과 경영학에서 인사관리분야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직이란 특정 조직의 구성원이 그 조직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Mobley(1982:10-11)는 “이직이란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는 개인이 스스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매듭짓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Price는 “사회 시스템 내에서 그 구성원 개인이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이직으로 정의하며 Frederick은 “특정한 사회체제 속에서의 근로자의 이탈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정길, 1999:25).

이직은 전통적으로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발적 이직에는 결혼이나 임신, 출산, 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직장을 떠나거나 더 나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의 이유 등으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전직(轉職)을 포함한다. 비자발적 이직은 자발적 이직과 달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직에서 이탈되는 것으로서 해고, 정년퇴직, 고용만료 등이 포함된다.

이직을 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두어 왔던 분야는 직무만족과 관련 있다. 직무만족 또는 불만족과 관련하여 Herzberg는 동기부여요인(만족요인)과 위생요인(불만요인)을 들고 있다. 직무에 대한 만족을 결정짓는 동기요인(motivators)에는 직무상 성취감, 직무성취에 대한 인정감, 직무내용, 책임감, 승진을 들고 있고, 직무에 대한 불만을 결정짓는 위생요인(hygiene)에는 정책, 감독, 보수, 대인관계, 작업조건 등이 있다. 이러한 위생요인은 직무수행상의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에 관계되는 요인들로서 위생요인이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위생요인이 충족되더라도 그것이 만족을 가져오지는 못한다(유종해, 2003:101-102). 이직 및 전직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모형은 직무만족이 중심역할을 하며, 직무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이직 또는 전직의사를 가지게 된다(Mobley, Rodger, Herbert & Bruce, 1979:495).

그러나 이직 또는 전직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Paul & Thomas(2000:4-14)는 이직을 하는 것에 대해 더 나은 기회, 편익, 시간, 거리, 조직의 미래에 대한 염려, 퇴출 두려움, 직장의 지리적 위치,

상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장비, 경력에 도움이 안되는 현 직장, 성과 피드백의 불충분, 직업도전, 스트레스, 자율성의 부족, 개발기회의 부족,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공헌에 대한 인식부족, 조직문화, 조직재배치, 조직의 통제, 성과평가, 개인적인 경력 변화, 동료와의 개인적 관계, 신체적 또는 의학적 이유, 기타 개인적 이유, 급여 또는 일반적 보상, 배우자의 전근, 받은 훈련, 받은 대우, 상류 수준의 관리, 일하는 환경, 일과 생활의 조화, 일하는 조건 등의 40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최근까지 이직의 요인에 관해 국내연구에서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고 주로 호텔종사자, 간호사, 보험판매원, 군인, 연구인력,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외국의 March & Simon 모형, Mobley 모형, Price & Mueller 모형, Steers & Mowday 모형, Bluedorn 모형을 토대로 하고 있다.

먼저 March & Simon 모형은 이직에 관한 연구를 최초로 체계화시킨 것으로서 인간이 조직에 참여하려는 동기와 조직을 이탈하려는 동기 그리고 이러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이론화 하였다. 조직이 그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유인이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주는 공헌보다 최소한 같거나 많을 때 조직에 남게 되지만 조직구성원들이 원하는 보상을 조직이 원활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면 조직을 떠난다는 것이다(March & Simon, 1961:99).

Mobley 모형은 직무만족과 이직사이의 심리적 결정과정을 이론화한 것이나 이에 대해 검증한 결과에서 Mobley 등(1978:414)은 직무불만이 이직의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하였다. 이에 비해 Mowday(1979:247) 등은 직무불만이 이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Price & Mueller 모형은 자발적 이직의 요인으로 대안적 직무기회, 업무의 단순성, 집중화 정도, 수단적 의사소통, 통합정도, 임금, 공평성, 승진기회, 직업정신, 일반훈련, 가족부양책임 등을 들면서 외부의 대안적 직무기회는 이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그 외 요인들은 직무만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Price & Mueller, 1981:544).

Steers & Mowday 모형은 기존의 이직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들인 직무태도, 인구통계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보상시스템, 감독 및 동료관계이의 더 많은 변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포괄적으로 이직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



다. 즉, 직무기대와 태도는 직무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배우자의 직업, 가족의 이주 등과 같은 업무외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이직의 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Steers & Mowday, 1981:240-245).

Bluedorn 모형은 이직의 원인에 관한 연구를 Mobley 모형, Price 모형, 조직몰입, 기대모형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통합한 모형이다. 즉, 직무의 자율성, 다양성, 공식화정도, 승진기회, 사회적 일체감, 공정성, 임금수준 등이 높으면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만족과 조직몰입이 커져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Bluedorn, 1980:112-126)

결국 최근까지의 이직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적 요인, 직무관련 요인,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주로 연령, 근속기간, 성별, 가족 부양책임, 학력정도, 결혼상태, 직업적성 등이 변수로 다루어졌다. 직무관련 요인으로는 급여수준, 직무성과, 직무만족, 감독자의 유형과 동료집단과의 상호작용 성격, 승진기회, 조직몰입 등이 주로 변수로 사용되었다. 외부 환경요인으로는 고용에 대한 지각, 실업률, 신규채용율, 노동조합의 존재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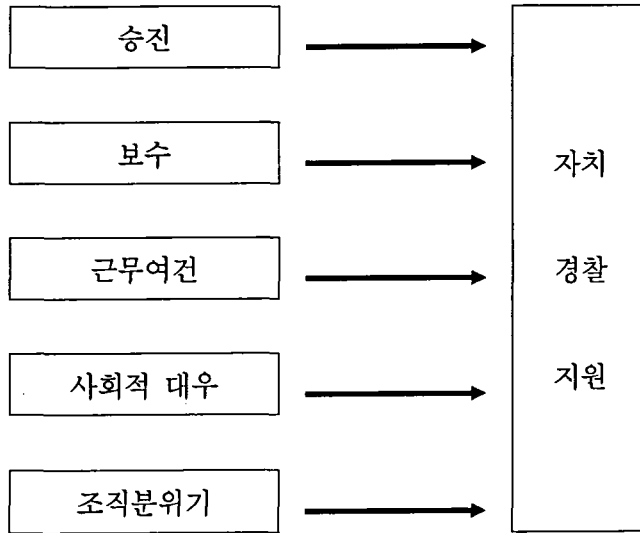
### Ⅲ. 조사설계 및 분석

#### 1. 조사설계

본 조사연구는 자치계 경찰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로 지원하려는 정도와 이러한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지원하려는 동기요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경찰이외의 분야에서 이직 및 전직요인과 관련한 계량연구에서 사용했던 변수 중 직무관련 요인으로는 승진, 보수, 근무여건, 조직분위기, 외부환경요인으로는 사회적 대우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변수로 한정하여 설정한 것은 이직 및 전직요인 관련 변수 가운데 경찰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즉, 자치경찰이 시행될 경우 자치경찰로 전직의사를 가지게 되는 경찰관들은 주로 현 경찰조직에서

승진이나 보수, 근무여건, 그리고 관료적인 조직분위기 등에 상대적 불만이 높은 40-50대층의 경위이하 그 중에서도 경사급 경찰관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림3-1〉 분석모형



그리고 현재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알고 있는지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경찰제도로 어떤 유형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 자치경찰 지원정도에 차이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연구의 대상은 경위이하 경찰관으로 한정하여 이에 대한 설문조사는 2005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경찰종합학교 피교육생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이 중 유효하게 회수한 199명에 대한 설문지를 한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처리하였다.

## 2. 조사분석의 결과

###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3-1〉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본 조사연구 대상자들의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이 184명(92.5%), 여성이 13명(6.5%)으로 남자경찰관이 월등히 많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4명(7.0%), 30대가 75명(37.7%), 40대가 85명(42.7%), 50대가 23명(11.6%)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중 40대가 가장 많았다.

계급별로 보면 순경이 29명(14.6%), 경장이 28명(14.1%), 경사가 98명(49.2%), 경위가 42명(21.1%)으로 경위이하 경찰관들 중 경사계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재직기간별로 보면 5년 이하가 31명(15.6%), 6-10년이 24명(12.1%), 11-15년이 64명(32.2%), 16년-20년이 49명(24.6%), 20년 이상이 29명(14.6%)으로 경찰재직기간이 11-15년에 해당하는 자가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62명(31.2%), 전문대졸이 55명(27.6%), 대졸이상이 78명(39.2%)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지역이 108명(54.3%), 중소도시가 65명(32.7%), 농촌지역이 23명(11.6%)으로 나타나 대도시 지역 근무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기능별 현황을 보면 경무 21명(10.6%), 생활안전이 118명(59.3%), 수사가 25명(12.6%), 경비 12명(6.0%), 교통이 11명(5.5%), 정보보안 5명(2.5%)으로 생활안전과 소속의 경찰관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3-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84	92.5
	여성	13	6.5
	무응답	2	1.0
	합계	199	100.0
계급	순경	29	14.6
	경장	28	14.1
	경사	98	49.2
	경위	42	21.1
	무응답	2	1.0
	합계	199	100.0
연령	20대	14	7.0
	30대	75	37.7
	40대	85	42.7
	50대	23	11.6
	무응답	2	1.0
	합계	199	100.0
재직 기간	5년 이하	31	15.6
	6 -10년	24	12.1
	11-15년	64	32.2
	16-20년	49	24.6
	20년 이상	29	14.6
	무응답	2	1.0
	합계	199	100.0
학력	고졸이하	62	31.2
	전문대졸	55	27.6
	대졸이상	78	39.2
	무응답	4	2.0
	합계	199	100.0
근무 지역	대도시	108	54.3
	중소도시	65	32.7
	농촌	23	11.6
	무응답	3	1.5
	합계	199	100.0
기능	경무	21	10.6
	생활안전	118	59.3
	수사	25	12.6
	경비	12	6.0
	교통	11	5.5
	정보보안	5	2.5
	무응답	7	3.5
	합계	199	100.0

## 2) 자치경찰 지원희망실태 분석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될 예정인 자치경찰에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표3-2>가 나타내고 있다. 현재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로 희망하는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점 척도 평균이 3점(보통)이하인 2.59이며 표준편차는 1.231이었다. 응답 빈도를 보면 자치경찰에 지원 희망에 대한 매우 부정이 19.9%, 부정 35.2%, 보통 20.9%, 긍정 14.3%, 매우 긍정 9.7%로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관들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기초자치단체 소속보다는 신분안정감이 높은 국가공무원인 현재의 경찰조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현재 추진중인 자치경찰의 권한이 국가경찰보다 훨씬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3-2> 현재 자치경찰 지원 희망에 대한 응답결과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5점척도평균
유효	매우부정	39	19.6	19.9	2.59
	부정	69	34.7	35.2	
	보통	41	20.6	20.9	
	긍정	28	14.1	14.3	
	매우긍정	19	9.5	9.7	
	합계	196	98.5	100.0	
결측		3	1.5		
합계		199	100.0		

자치경찰 지원 희망정도에 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유무를 분산분석결과(ANOVA)에서는 계급별·학력별·근무지역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 자치경찰 지원 희망정도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여자 경찰관이 남자 경찰관보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희망정도가 훨씬 낮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7)</sup>. 이는 현재 여자경찰관의 경우 여성 취업이 남성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매년 여경 채용시험에서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보일만큼 여자경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 국가경찰 소속으로 있는 것이 자치경찰로 전직

7) 자치경찰 지원 희망정도에 대한 성별 평균은 남자가 2.64, 여자가 1.77이었고, 분산분석한 결과에서 F값은 4.542, 유의확률은 .004로 나타났다.

하는 것보다 승진이나 복리후생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자치경찰 지원 희망정도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20대 연령의 경찰관들이 자치경찰 지원 희망 정도가 가장 낮았고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와 40대간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40대와 50대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8)</sup>. 이는 40대의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경찰경력을 가진 경찰관들이 경찰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신입 20대 경찰관과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연령층의 경찰관들 보다 상대적으로 자치경찰이 시행될 경우 현재의 국가경찰에서 보다는 승진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근무년수 정도별 자치경찰 지원 희망정도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희망이 가장 낮았고 11-15년 경찰경력을 가진 경찰관들이 자치경찰 지원 희망을 가장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16년-20년 근무경력의 경찰관들도 11-15년 근무경력의 경찰관 다음으로 희망정도가 높았으며 이들과 20년 이상 근무 경찰관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sup>9)</sup> 이러한 결과는 경찰재직기간이 아주 짧은 신입 경찰관들이나 퇴직을 앞둔 장기근속 경찰관들은 자치경찰로의 전직하려는 의사가 아주 낮고, 10년에서 20년 정도 근속한 경찰관들이 상대적으로 자치경찰로 지원하려는 의사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근속년수가 짧은 신입경찰관들은 현재의 국가경찰 조직에서 승진이나 보수 등에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10여년 이상한 경찰관 가운데 아직 남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 현재의 국가경찰조직에서 더 이상 높은 승진이나 보수 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Porter과 Steers(1973:151-176)가 이직과 관련하여 60편 이상의 연구를 재검토한 결과에서 이직에 영향을 주는 4개의 범주<sup>10)</sup> 가운데 연령, 근속연수

8) 자치경찰 지원 희망정도에 대한 연령대별 평균은 20대가 1.79, 30대 2.62, 40대 2.82, 50대 2.09였으며,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은 4.542, 유의확률은 .004로 나타났다.

9) 자치경찰 희망 정도에 대한 경찰재직기간별 평균은 5년이하 2.23, 6-10년 2.29, 11-15년 2.90, 16-20년 2.88, 21년 이상 2.03이었고, 분산분석한 결과 F값은 4.507, 유의확률은 .002로 나타났다.

10) Porter와 Steers가 이직에 영향을 준다고 확인한 4개의 범주는 조직(급여와 승진정책), 직접적 작업환경(작업단위의 규모, 감독유형, 동료관계), 작업자체(작업이 요구하는 특성), 개인적 특성(연령, 근속연수 등)이었다. (조현석, 2003:34)

등 개인적 요소가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 및 근속년수와 이직과는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려는 기초 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38.6%, 긍정적 답변 21.9%, 보통 39.6%였고 5점 척도기준 평균 2.78로 나타나 일선경찰관들이 현재 입법추진 중인 시·군·구 중심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찰제도 유형을 묻는 설문에서는 지방경찰을 완전히 자치경찰로 하는 미국식의 자치경찰제 27.7%, 지방경찰의 일부(경감이하)만 지방자치경찰로 하고 있는 일본식 절충형 15.4%,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찰과 병렬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유럽식 모형 30.8%, 현 국가경찰제도 26.2%로 각각 응답하였다.

### 3) 자치경찰 지원요인 분석

〈표3-3〉은 자치경찰에 지원희망과 관련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모두 상관관계가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3-3〉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계수					
		승진유리	보수유리	근무여건유리	사회대우유리	민주적조직분위기	자치경찰지원희망
승진 유리	Pearson 상관계수	1	.579**	.571**	.617**	.520**	.415**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N	195	194	195	195	195	195
보수 유리	Pearson 상관계수	.579**	1	.591**	.545**	.517**	.430**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N	194	194	194	194	194	194
근무여건 유리	Pearson 상관계수	.571**	.591**	1	.655**	.611**	.407**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N	195	194	195	195	195	195
사회대우 유리	Pearson 상관계수	.617**	.545**	.655**	1	.575**	.480**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N	195	194	195	196	195	196
민주적 조직분위기	Pearson 상관계수	.520**	.517**	.611**	.575**	1	.423**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N	195	194	195	195	195	195
자치경찰지원희망	Pearson 상관계수	.415**	.430**	.407**	.480**	.423**	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N	195	194	195	196	195	196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3-4〉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원요인으로 설정한 각 독립변수 설문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량이다.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은 앞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이 현행 국가경찰조직보다 덜 관료적이고 민주적일 것이라고 보는 경향(5점 척도 평균 3.54)이 있으며, 근무여건과 보수에 있어서 국가경찰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사회적 대우는 현행 국가경찰보다 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경찰조직이 경찰업무의 특성상 돌발적이고 위험한 업무 등에 기동성 있게 대처해야 할 때가 많고 또한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대처럼 지휘복종체계가 강조되어 계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직적 조직문화인 반면에 구청 등 일반행정기관들은 경찰조직 보다는 상당히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이 창설될 경우 경찰보다는 민주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무여건과 보수에 대한 높은 기대는 자치경찰이 시범적 시행을 신청해 놓고 있는 지역이 서울 강남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고, 이러한 지역에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경찰의 법정 근무시간 이외 초과적으로 근무하는 시간 등에 대해 당연히 금전적 보수 또는 근무여건의 개선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우에 대한 기대가 낮게 나타난 것은 자치경찰의 권한이 범죄수사 등을 할 수 없고 단지 방범순찰, 기초질서 단속, 교통단속, 지역행사 경비 등에 그쳐 실제적 권한이 현재의 국가경찰보다 약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우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3-4〉 자치경찰 지원요인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량

설문 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승진 유리(V2)	195	1	5	3.01	1.082
보수 유리(V3)	194	1	5	3.38	1.012
근무여건 유리(V4)	195	1	5	3.49	1.081
사회대우 유리(V5)	196	1	5	2.91	1.073
민주적 조직분위기(V6)	195	1	5	3.54	1.021

〈표3-5〉는 이러한 각 변수들이 현재 자치경찰 지원을 희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3-5〉 회귀분석결과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534(a)	.285	.266	1.055

a 예측값: (상수), 민주적 조직분위기, 보수 유리, 승진 유리, 사회대우 유리, 근무여건 유리

분산분석(b)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83.525	5	16.705	15.018	.000(a)
잔차	209.115	188	1.112		
합계	292.639	193			

a 예측값: (상수), 민주적 조직분위기, 보수 유리, 승진 유리, 사회대우 유리, 근무여건 유리

b 종속변수: 자치경찰지원희망

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44	.313		.459	.647
승진 유리	.098	.098	.086	1.005	.316
보수 유리	.206	.102	.169	2.021	.045
근무여건 유리	.012	.106	.010	.109	.913
사회대우 유리	.276	.105	.143	1.722	.087
민주적 조직분위기	.173	.100	.240	2.639	.009

a 종속변수: 자치경찰현재희망

〈표3-5〉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조사연구에서 자치경찰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5가지 변수 중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수와 민주적

인 조직분위기 2가지뿐이었고 승진, 근무여건 및 사회대우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IV. 조사분석 결과의 논의

자치경찰의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로의 지원 희망정도와 그러한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가경찰체제하의 현행 경찰공무원들은 기초 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로 가기를 크게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5점 척도 평균이 2.59로 나타나 지원희망이 낮은 편이었다. 이는 국가경찰에 익숙한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자치경찰로 지원을 희망 하는 데는 계급이나 학력 그리고 근무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없었으나 성별, 연령별, 경찰근무 년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 경찰관이 남자 경찰관보다 자치경찰로 지원을 희망하는 것이 훨씬 낮았고, 40대 경찰관들이 자치경찰로 지원하는 희망정도가 가장 높았고 이에 비해 20대 경찰관들은 가장 낮았다. 그리고 경찰근무 년수가 11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경찰관들이 자치경찰 지원 희망을 높이고 있으며 20년 이상 된 경찰관들의 자치경찰 지원 희망 정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경찰관들은 기초 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이 현행 국가경찰에 비해 조직이 덜 관료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분위기 일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근무여건이나 보수가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승진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보며, 사회적 대우는 국가경찰보다 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경찰체하의 현행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 지원을 희망하는데 보수가 유리할 것 이라는 기대감과 민주적인 조직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승진이나 근무여건 그리고 사회적 대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지원하려는 정도가 낮지만 현재의 경찰조

직에서 보수나 관료적인 조직분위기에 불만이 높은 11년에서 15년 정도 경찰경력을 가진 경찰관들이 자치경찰로 지원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V. 결 론

국립경찰 창설이후 그 동안 여러 차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위해 자치경찰 노력 시도가 있었으나 현 참여정부 들어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려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인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경찰과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대를 창설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시·군·구의 기초 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는 지역적 치안불균형을 야기하고, 광역적 치안행정 수요에 효율적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내세우며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 등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당 소속으로 있는 상황에서 기초 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는 정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민참여와 감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분산과 지역주민의 참여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자치제 경찰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할 수 있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기초 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의 시범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지원 희망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희망은 높지 않았다. 그리고 자치경찰 지원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승진, 보수, 근무여건, 사회적 대우, 덜 관료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분위기 등 5가지로 설정하고 조사 분석한 결과 이 중 보수와 조직분위기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 국가경찰조직 속에 있는 경찰 공무원들이 보수와 조직분위기에 대해 상대적 불만이 높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사관리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 등에 대한 현실적 대책과 조직관리의 방식에 있어서도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계급 중심의 수직적 문

화에서 민주적인 수평적 문화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전직하려는 요인은 본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 이외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치경찰로의 전직희망 정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 시범적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경찰 소속의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을 지원 희망정도에 대해 최초로 조사 연구한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무엇보다 전체 경찰관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경위이하 경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점과 자치경찰로의 전직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선정에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점 그리고 자치경찰 지원 요인으로 설정한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이 분야의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우신문(2005). "지방자치경찰제 어디까지 왔나?". 3.4:1.
- 경찰대학(2003). 「경찰방법론」. 서울:삼문문화.
- 경찰백서(2000). 서울:경찰청.  
 (2001). 서울:경찰청.  
 (2002). 서울:경찰청.  
 (2003). 서울:경찰청.  
 (2004). 서울:경찰청.
- 경찰개혁위원회(1998). 「자치경찰공청회 자료」. 서울:경찰청.
- 동아일보(2005). "자치경찰제 2007년 하반기 도입". 8.3:A6.
- 문재우(2003). "한국의 자치경찰제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5:7-46.
- 유종해(2003). 「현대조직관리」. 서울:박영사.
- 안영훈(2005).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지방자치」, 197:36-39.
- 양영철(2005).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도입과 운영방안". 「지방자치」, 197:32-35.
- 이정길(1999). 「군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 이황우(2002). 「경찰행정학」 서울:법문사.  
 (2004).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지방자치」, 195:29-33.
- \_\_\_\_\_(1995). "지방자치시대 자치경찰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3-21.
- \_\_\_\_\_(1998).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공청회자료집」: 3-25.
- 조현석(2003). 「관공호텔종사원의 이직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학원.
- 정진환(1998). 「경찰행정론」 서울:대영문화사.
- 최종술(2003).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논총」, :101-133.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2005). 자치경찰법안.
- Bluedorn, A. C.(1980). A unified model of turnover from organizations. Human Relations. 25:112-126.
- March, J. G. & Simon, H. A.(1961). Organization. New York : John Wiley & Sons.
- McGarrel, Edmund F(2003). " Global and Local Policing : Common Principles for the Future of Policing".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창립40주년기념국제학술세미나자료집」: 37-59.
- Mintzberg, Henry(1983). Structuring in Fives : Designing Effective Organizations, New Jersey : Prentice-Hall.
- Mobley, W. H.(1982). Employee Turnover Consequences and Control. Addison-Wesley,

Reading Masschusetts.: 2-16.

Mobley, W. H., S. O. Horner, A. T. Hollingsworth.(1978). A Evaluation of Precursor of Hospital Employee Turnove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4):408-414.

Mowday, R. T., R. M. Steers, L. W. Porter.(1979). The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Voctional Behavior*. 14:224-247.

Peak, Kenneth J(2003)., *Policing America*,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Porter, L. W. & Steers, R. M.(1973). Organizational Work and Personal factors in Employee Turnover and Absenteeism. *Psychological Bulletin*, 80(2):151-176.

Price, J. L. & Mueller, C. W.(1981). A Causal Model of Turnover for Nurs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4(3):535-547.

Sreers, R. M. & Mowday, R. T.(1981). Employee Turnover and Post-decision A ccommodation Precesses, In L. L. Cummings & B. W. Staw(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Greenwich, CT : Jai Press inc. 3:235-281.

<http://www.met.police.uk>

[http://www. police.co.kr](http://www.police.co.kr)

## ABSTRACT

### **A Study on the Police Officer of the Determinants to Desire Turnover Local Autonomy Police**

Seok, Cheong Ho

In Korea, local autonomy police has been discussed several times since Liberation in terms of expanding the democracy of police, but this suggestion has not been pursued. However under the incumbent government, the local policing system will be fully implements from 2006, and the government says that it aims to introduce 'model management' from October this year. The model of local policing now in force is based on the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forces organized in parallel within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The heads of local authorities have the power to appoint local police. Of these, local authorities can use public servants working for the national police for 'special purposes'.

The research questions for this study were to what extent public servants working for the national police in these circumstances can desire local autonomy police, and what factors influenced their decision to desire in local autonomy police. After analyzing the results of a survey of police officers, the study found that public servants working for the national police did not have great expectations of desire in local autonomy polic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decision to desire in local autonomy police were the hope that remuneration would be good, and the hope that the atmosphere within the police force would become less bureaucratic and more democratic than the current system.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hopes that promotions and working conditions would improve and that police would be treated better in society did not influence the decision of public servants working for the national police to desire in local autonomy police.

**[Key words : national police ,autonomy police , democracy]**